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14.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405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9. 30. 우종혁의원 대표발의 (7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0. 14.)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우종혁)

가. 제안이유

- 본 개정안은 강남구의 자립준비청년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5세 이상의 자립 준비 단계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안 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
- 자립준비청년등의 의견 청취 (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 우종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자립 준비 단계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¹⁾은 18세(본인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 연장 가능)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자립을 시작하게 됨.
- 자립준비청년은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보호를 벗어나 독립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기 때문에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는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비롯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우리구도 지난 2023. 4.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서 자립준비청년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자립 지원은 경제적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8.2%로 집계되었음.
또한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23)”에

1)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따르면,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이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비율은 68.1%, 주거 불안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35.9%였으며, 우울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비율은 46%로 조사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심리적 취약성이 여전히 큰 실정임.

-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자립역량 및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 나.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된 사람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이하 “자립준비청년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에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자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생활·주거·진로·취업 등과 같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비용지원사업
2. 주거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등 재정관리지원사업
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7.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
8.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9.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대상 및 기간)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등에게 퇴소일 또는 보호조치 종료일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제9조(보호기간의 연장)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의3에 따른다.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자립준비청년등의 의견 청취)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자립준비청년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